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82
----------	-------

제출년월일 : 2012. 10.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공포 등 단위업무별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제·개정시 20일 이상 입법 예고하되,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생략(안 제5조~제11조)

1) 입법예고문은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안 제7조)

2) 입법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안 제10조~제11조)

나. 자치법규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미제출(안 제12조~제14조)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작성

2) 비용추계서 제출은 구의회에 안건 부의시 첨부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도 첨부(안 제14조)

다. 자치법규의 공포는 공포전문을 붙여 공포하되 공포일은 구

보 발행일로 함(안 제15조~제21조)

1) 구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안 제19조)

라.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안 제22조)

마.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 범위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으로 정함(안 제24조)

바. 부칙에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나.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2. 8. 30 ~ 9. 19(제출된 의견 없음)

나.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 해당사항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 해당사항없음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 9.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6조 및 제66조의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실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법인·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시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자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4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제15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16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17조(공포방법) ①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②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구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훈령의 준용) 훈령의 발령 및 시행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22조(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수정·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구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3조(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

제24조(주민의 조례제정 및 폐쇄청구 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폐쇄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 진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						
	○						
	소계(a)						
구분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의존 재원	소계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구분 자체 수입	소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합계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 ○○○과 ○○○
연락처	00-0000-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요령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출의 순 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시비보조금·지방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 ○○○과 ○○○
연 락 처	00-0000-0000